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69회 정례회
'18. 12. 03.(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상욱 의원 등 7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8년 11월 21일

○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2일

3. 제안사유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부 용어, 문구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 중 내용상 중복으로 불필요한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정의 삭제 (안 제2조)
- 나.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신설에 따른 지원사업 확대 (안 제5조)
 -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추가
- 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안 제8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위탁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일부 용어, 문구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2017. 2. 8.) 에 따라 신설된 법 제30조의2가 본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바, 이를 본 조례안 제1조(목적)에 근거 법률로 명시하였으며,
 - 본 조례의 직접적 위임 근거로서의 의미가 다소 약한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는 목적 기술의 간결성을 위해 삭제한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 안 제2조제1호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에 있어 “~ 따른 장애인”을 “~ 따른 사람”으로 개정된 것은, “장애인”이란 용어가 주는 차별성 및 위화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2조제2호의 “장애인가족”에 대한 정의는,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를 인용해 조문을 간결화 시켰고, 같은 조 제3호의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정의는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지원사업)에도 동일하게 중복 규정되어 있는 바, 별도의 정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지원사업)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1항의 신설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지만,
 - 본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2항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 또한 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수행기관, 즉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계약기간 5년의 의무 적용 대상 기관으로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조직형태 및 기능을 볼 때, 타 장애인복지시설들과 달리 위탁기간을 꼭 3년으로 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타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 및 수탁기관 양자에게 긍정적이며,
 -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위임사무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바, 위탁기간의 연장 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에 따라, 장애인 지원 사업 내용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며, 입법예고와 해당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